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31일, 강명구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2. 19.)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명구 의원)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 단계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끼기 쉬운 상태로,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 상담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주기의 단축이 필요함.

이에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먼저, 자립지원 조치에 상담 지원 추가와 관련한 사항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은 10점 만점¹⁾에 5.6점으로 전체 청년(6.72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자살생각 유경험률도 전체 청년(10.5%)보다 높은 46.5%로서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과 같이 심리지원을 추가하는 경우 보호종료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1) 0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5점: 보통, 10점: 매우 만족함

다음,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임.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상황,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할 경우 보호종료아동의 욕구를 적시성 있게 파악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자립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다만, 자립지원 실태조사 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어 2023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실태조사의 주기를 보면, 청년 실태조사는 분야별 2년,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의 경우 3년, 정신건강·고독사 등은 5년인바, 유사 실태조사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